

## 공 시 송 달 공 고

「도로법」 제61조(도로의 점용 허가), 제75조(도로에 관한 금지행위) 등을 위반하여, 「도로법」 제74조(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)제1항 규정에 따라 불법적치물을 제거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5조(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) 및 시행규칙 제37조(적치물 등의 관리 등) 규정에 따라 적치물의 내역 및 보관장소를 공고하고자 하며, 점용자 미상 또는 송달 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송달 불가능하여,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(서류의 송달)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2. 4. 20.

영동군



1. 공고내용 : 도로 무단점용 시설물 보관 및 처리 공고  
(영동읍 계산리 912 구두수선점포 )
2. 공고기간 : 2022. 4. 20. ~ 2022. 5. 23.(33일간)
3. 공고 및 게시장소 :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
4. 보관 적치물 현황
  - 가. 종류 및 수량 등 : [적치물 등의 보관대장] 참조
  - 나. 적치물 보관장소 :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1-1번지(영동군 구매립장)
5. 관련근거 : 「도로법」 제7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
6. 공고 및 게시장소 :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7. 고지사항
  - 해당 적치물 소유자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「도로법」 시행령 제76조(적치물 등의 반환 귀속) 제1항 규정에 따라 적치물의 소유 및 권리자인 증빙서류(신분증, 매매계약서, 구입영수증 등)와 적치물 청구증을 지참하여 영동군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또한 위 공고기한까지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을 시 해당 적치물은 같은법 제76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귀속되어 소유 및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8. 문의사항 : 영동군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 ☎ 043-740-3502